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6.28.(화) 국무회의 시작 시(석간보도 가능)	배포 일시	2022. 6. 27.(월) 오후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	책임자	과 장 서진희(044-200-5610)
		담당자	사무관 김지환(044-200-5623)

어장환경 개선, 규제는 줄이고! 효과는 높이고!

-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6.28.(화))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어장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월 2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장관리법」에서는 어장을 이용하는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장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해 3년에 1번씩 어장에 쌓인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장별로 퇴적물이 쌓이는 정도와 폐기물이 유입되는 정도가 달라 효과적인 어장 관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고, 어업인들의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부터 5년 간 진행한 전국 주요 어장의 퇴적층과 침적물의 특성조사 결과를 기반으로「어장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어장별로 청소주기를 3년에서 5년까지 세분화하였다. 가두리식 어류 양식장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3년에 한 번씩 어장 청소를 하도록 하였고, 수하식 패류와 가두리식 패류 양식장 등은 4년에 한 번씩, 그리고 바닥식 해조류 양식장과 바닥식 어류 양식장 등은 5년에 한 번씩 어장청소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이번「어장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등록 선박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작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별도의 변경등록 없이 다른 어장정화·정비업자의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민과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고, 어장관리의 효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어장환경 보전·개선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1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요

□ 추진배경

○ 어장 환경의 효율적 보전·개선을 위한 어장 청소의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과 어장정화·정비업의 선박사용에 관한 규제완화 필요성 제기

□ 주요 내용

○ **어장청소의 주기 및 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12조, 별표 1 신설)

- 양식면허의 종류, 양식품종별로 **어장청소**의 **주기**를 **3년에서 5년 사이의 기간**으로 **세분화**하고, **청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

* **(현행)** 면허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어장청소를 하여야 하고 어장청소를 끝낸 날로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하여야 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관리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신설

○ **어장정화·정비업의 선박 사용에 관한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2)

- 어장정화·정비업자가 **다른 어장정화·정비업자 소유의 선박**을 **사용**할 경우, **임차권 설정**과 **등록사항 변경을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

* 어장정화·정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작업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등록 선박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작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참고 2 [별표 1] 면허종류 및 양식방법 등에 따른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시행령 제12조제1항 관련)

면허의 종류	양식방법	양식환경	양식품종	시설물	주기	방법
해조류 양식업	수하식 (지주망식)	조간대	김, 매생이 등	대나무, 지주, 밧줄 등	5년	인력, 인양장비 (정화선, 굴삭기, 관리선 등)
	수하식 (부류망식)	조하대	김 등	뜸, 밧줄, 그물, 닻 등	4년	잠수,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등), 형망장비(형망선)
	수하식 (연승식)	조하대	미역, 다시마, 톳, 모자반 등	뜸, 밧줄, 닻 등	4년	
	바닥식 (투석식)	조간대	김, 파래 등	돌 등	5년	인력,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굴삭기 등)
패류 양식업	가두리식	조하대	전복 등	뜸, 밧줄, 가두리, 그물, 닻 등	4년	잠수,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등), 펌프식 준설선 (수처리선 포함)
	수하식 (연승식)	조하대	굴, 담치, 참가리비, 해만가리비 등	뜸, 밧줄, 닻, 채롱 등	4년	잠수,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등), 형망장비(형망선)
	바닥식 (살포식)	조간대	바지락, 꼬막, 가무락, 백합, 동죽 등	모래, 대나무 등	5년	인력,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굴삭기 등)
		조하대	바지락, 피조개, 새조개, 키조개 새꼬막 등	밧줄, 그물, 닻 등	4년	잠수,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등), 형망장비(형망선)

	바닥식 (투석식)	조간대	굴 등	돌 등	5년	인력,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굴삭기 등)
		조하대	전복 등	돌 등	5년	잠수,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등)
어류등 양식업	가두리식	조하대	조피볼락, 돔류, 농어, 쥐치, 복어류, 능성어류, 방어, 고등어, 민어 등	뜸, 밧줄, 가두리, 그물, 닻 등	3년	잠수,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등), 펌프식 준설선 (수처리선 포함)
	수하식 (연승식)	조하대	우렁쉥이, 미더덕, 오만둥이 등	뜸, 지주, 밧줄, 그물, 닻 등	4년	잠수,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등), 형망장비(형망선)
	바닥식 (투석식)	조하대	해삼 등	돌 등	5년	잠수, 인양장비 (정화선, 관리선 등)

비 고

1. 어장청소를 실시하는 자는 양식환경(조간대, 조하대), 암반·인공어초·해저케이블 등 어장의 저질(底質)상태, 어장 인근 취수 시설, 어업활동 영위(營爲) 시기 및 시설물의 철거·이설 여건을 고려하여 어장청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 같은 면허 내에서 서로 다른 양식 방법을 혼합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 어장청소 주기는 선택 가능한 어장청소 주기 중 단기로 하고, 어장청소 방법은 해당하는 복수의 방법 중에서 비고 1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3. 마을어업의 어장청소 주기는 위 표에서 정한 어장청소 주기로 하고, 어장청소 방법은 인력, 잠수 또는 인양장비(정화선, 관리선, 굴삭기 등)로 한다. 다만, 서로 다른 양식 방법을 혼합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의 어장청소 주기는 선택 가능한 어장청소 주기 중 단기로 한다.
4. 복합양식업의 어장청소 주기는 선택 가능한 어장청소 주기 중 단기로 하고, 어장청소 방법은 해당하는 복수의 방법 중에서 비고 1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5. 협동양식업의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은 위 표에서 정한 어장청소 주기 및 방법으로 한다. 다만, 서로 다른 양식 방법을 혼합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의 어장청소 주기는 선택 가능한 어장청소 주기 중 단기로 하고, 어장청소 방법은 해당하는 복수의 방법 중에서 비고 1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